

2026학년도

학교운영위원회 규정
(명설유치원 통합)

수 지 초 등 학 교

2026 학교운영위원회 규정(병설유치원통합)

수지초등학교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초.중등교육법」 및 「초.중등교육법 시행령」, 「유아교육법」에 의거 수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.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설치) 이회는 수지초등학교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며 수지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
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

제3조(위원의 구성) ① 본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 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,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6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의 자격)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.

제5조(선출관리위원회)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.

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.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
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

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
제6조(위원의 선출)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

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. 단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**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**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9. 15., 2020. 2. 25.>

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·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9. 15.>

-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 단
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
- ③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,
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.
- ④ 유치원 학부모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.
-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
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-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
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는 재
선출 공고를 한다.

제7조(위원의 선출시기)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
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
제8조(보궐선거)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. 다만,
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운영위원회 결정으로
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-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3장 회의운영 등

제9조(서류제출 요구) ① 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
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

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

제10조(회의 등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는 4월과 9월 연 2회 개최한다.

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1조(회의참관)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,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2조(학생대표를 통한 안전제안) ① 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전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학생안전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학생안전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전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
제13조(질서유지)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14조(공청회)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전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인. 학부모.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(이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.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전.일시.장소.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

한다.

-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운영 경비) 위원연수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
제16조(회의운영 규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: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: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